

1. 개정이유

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가 매년 제출해야하는 “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”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, ‘22년 10월 일몰규제에서 해제되었기에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 그간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(안 제21조)

- 제16조(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)가 일몰규제에서 해제되었기에 재검토 조항 삭제

나.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사항 정비(안 제16조 등)

- 서류 제출처 등을 문화재청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
 -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(안 제16조)
 -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(안 제17조)
 - 우수 이수자 추천서 제출(안 제17조의2)
 -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(안 제20조)
 - 별지서식 제12호, 제13호, 제18호 서식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립무형유산원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립무형유산원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립무형유산원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문화재청장”을 “국립무형유산원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 중 “문 화 재 청 장”을 “국립무형유산원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중 “문 화 재 청 장”을 “국립무형유산원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중 “문 화 재 청 장”을 “국립무형유산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

국가무형문화재 명칭		☐ 보유자 ☐ 보유단체 ☐ 전승교육사	성명 (서명 또는 인) (보유단체명)
전수교육 세부 계획	1월		
	2월		
	3월		
	4월		
	5월		
	6월		
	7월		
	8월		
	9월		
	10월		
	11월		
	12월		

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
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

작성방법

※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, 장소, 교육내용, 교육시간, 전수교육 지도자(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),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

국가무형문화재 명칭		☐ 보유자 ☐ 보유단체 ☐ 전승교육사	성명 (서명 또는 인) (보유단체명)
전수교육 세부 실적	1월		
	2월		
	3월		
	4월		
	5월		
	6월		
	7월		
	8월		
	9월		
	10월		
	11월		
	12월		
전수교육 증명 자료(사진 등)			

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
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

첨부서류 및 작성방법

- 전수교육 증명자료(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)
- ※ 전수교육 증명자료(사진 등)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 - ※ 전수교육 월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, 장소, 교육내용, 교육방법, 교육시간, 전수교육 지도자(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),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

추천받는 사람	국가무형문화재 명 칭			
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
경 력	국가무형문화재 전 수 경 력	보 유 자 성 명	전수 기간	개월
		보유단체명		

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국가무형문화재
○○○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추천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

첨부서류 및 첨부요령
1.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.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(3.5센티미터 × 4.5센티미터) 1장 *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)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,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,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<u>문화재청장</u> 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16조(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국립무형유산원장</u> ----- ----.
제17조(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)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 대상별 지원규모는 <u>문화재청장</u> 이 정한다.	제17조(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립무형유 산원장</u> -----.
제17조의2(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)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, 보유단체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	제17조의2(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<u>문화재청</u> <u>장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· 2. (생략) 제20조(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)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<u>문화재청장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 제21조(규제의 재검토) <u>문화재청</u> <u>장</u>은 제16조에 따른 전수교육 <u>계획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 201</u> <u>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</u> <u>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</u> <u>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</u> <u>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</u> <u>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	----- <u>국립무형</u> <u>유산원장</u>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제20조(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립무형유산원장</u>----- --. <삭 제>
---	--